

의안번호	2221103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5. 12. 2.
추계번호	25C5952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4(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화데이터(문화유산, 예술작품, 공연·전시 정보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제공·연계·활용 등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향유 증진과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데이터 생성·연계·이용 촉진 및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4(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4)

- 개정안은 문화데이터의 수집·제공·연계·활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 수립과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시스템의 구축·운영과 문화데이터 활용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결과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 또한 논의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수집하여 개방하는 문화공공데이터 광장, ② 이미지·3D·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문화자원 공동활용 플랫폼, ③ 가치있는 문화분야 빅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표】 문화데이터 관련 플랫폼 현황

시스템명	주요 기능
문화공공데이터광장 (culture.go.kr/data)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타부처·지자체 398개 기관 DB 및 문화정보 DB(메타데이터) 개방(444종 API 제공)
디지털문화자원 공동활용플랫폼 (culture.go.kr/share)	문체부,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화·관광 데이터, 저작물(문서, 이미지, 동영상, 3D 에셋, 음원, 문서 등) 개방
문화빅데이터플랫폼 (bigdata-culture.kr)	민간 데이터중심의 문화생활, 여행 등 문화분야 고가치 빅데이터(CSV, JSON, 이미지, 동영상 등) 유통 플랫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